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48/ 전송(02)790-8911  
**보험국** 보험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이재인[6548]/E-mail 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41-12055호

시행일자 2023. 1. 3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  
 제 목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 및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 
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

가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2호(2023. 1. 2.)

나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3호(2023. 1. 2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 및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이 일부개정 된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

- 다 음 -

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2호	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3호
○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(안 제12조, 안 별지 제2호 서식) - 무분별한 장기치료 방지를 위해 경상환자(상해12~14등급)*가 4주를 초과하여 치료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 부여 *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, 3cm 미만의 얼굴 부위 찢김상처 등 - 4주 경과 후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등이 지급보증(보험금 지급) 중지를 통보하도록 명시	○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(별지 제9호 서식) - 경상환자(상해 12~14등급) 4주 초과 진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지급보증기간 기재토록 별지 제9호 서식 개정

# 붙임 :

- 1)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 일부 개정안 1부.
- 2)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 개정전문 1부.
- 3)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안 1부.
- 4)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개정전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# 수신처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, 각과개원의협의회